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(안)

심 사 보 고 서

1996. 9. 20
도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달서구청장

나. 제출일자 : 1996. 9. 11

다. 회부일자 : 1996. 9. 12

라. 상정 및 의결

○ 제49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(임시회)

•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상정 : 1996. 9. 19.

•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의결 : 1996. 9. 19.

2. 제안설명요지(설명자 : 지적과장 김조삼)

가. 제안사유

○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개정(95. 12. 29 법률 제5108호) 및 동법 시행령 개정(96. 6. 29 대통령령 제15093호)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보다 합리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.

3. 관련근거

○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 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3항

4. 주요골자

○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대구광역시 달서구 토지평가위원회로 개정

○ 설치조례, 종전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3항으로 규정한 것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 2를 추가함.(안 제1조)

○ 위원회를 심의사항을 종전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을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준하던 것을 법 제10조의 2 ①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법 제10조의 3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코자 함.(안 제2조)

○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15~20인 이내에서 10인이상 15인이내로 조정(안 3조 1항)

○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(안 제3조 2항)

○ 위원회 위원은 지역내에서 지가에 정통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되었던 것을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개정(안 제3조 4항)

5. 검토의견(전문위원 : 김학수)

○ 본 조례 개정(안)은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8호 및 1996년 6월 29일

대통령령 제15093호로 개정됨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여 현실정에 맞도록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생각되며

○ 법 제10조의 2 ①항 규정에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법 제10조의 3 규정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해당 주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바람직 하다고 사료되며

○ 위원구성인원 15~20인이내에서 10인이상 15인이내로 하향조정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매우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며

○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조정한 것은 민선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항상 민의를 수렴하고 지역발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6. 질의 · 답변요지(답변자 : 지적과장 김조삼)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○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의 내용은?	○ 동법 제10조2 1항에 규정된 내용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에 관한 내용으로 당초 동법 시행령 제14조1항에 규정된 심의내용은 폐지되고 동법 제12조의2 규정에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이 '95. 12. 27 본 조 신설됨에 따라 동법 제10조2에서 규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사항만 구지방토지평가위원에서 심의토록 개정
○ 달서구 관내 표준지 필지수는 얼마나 되는지요?	○ 당초 94년도에 표준지가 1,300필지로 정한 것을 96년도에는 1,597필지로 확대되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다소 도움을 주고 있음.

7. 토 론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반대 없음)